추가약정서(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 개정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(안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
<td>

제 1 조(목적)

이 약정서는 (신설) 1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'주택'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[1]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· 조정대상지역(이하 '규제지역')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4 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제 5 조에 따라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제 3 조 (구입대상 주택)
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소유자</th><th>~~규제지역구분*~~</th><th>주소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~~*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중 해당되는 지역을 기입~~

제 4 조 (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)

①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
</td>
<td>

제 1 조(목적)

이 약정서는 무주택자 또는 1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'주택'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[1]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· 조정대상지역(이하 '규제지역')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4 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제 5 조에 따라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제 3 조 (구입대상 주택)
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소유자</th><th>(삭제)</th><th>주소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(삭제)

제 4 조 (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)

①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
</td>
<td>

- 무주택자 6 개월내 전입 약정을 위한 문구추가

- 규제지역 구분 삭제
</td>
</tr>
</table>

현행	개정(안)	비고
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1 년,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 년(이하 '정해진 기간')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	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6 개월(이하 '정해진 기간')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	-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요건 강화
②(생략)	②(좌동)	
제 5 조 (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전입 의무)	**제 5 조 (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전입 의무)**	
①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1 년,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 년 이내에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.	①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.	-제 4 조 1 항 문구로 정비
②(생략)	②(좌동)	
제 7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	**제 7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**	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2)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(신설)됩니다.	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2)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주3)됩니다.	-제한 대상 주택관련대출 명확화
1~3. 생략	1~3. 좌동	
(신설)	주3) 「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6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	